

정보화시대의 위협자, 사이버폭력 : 현황과 대책

정 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요약 |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고도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시대, 사이버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위협자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상에서의 언어폭력은 비밀비재한 일이 되었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증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의 형태로 확산되던 이러한 사이버폭력 현상은 한 인터넷매체에서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한 사건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또한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댓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한 무분별한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폭력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

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3조 제4항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공간의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사이버폭력의 효과적 방지대책으로는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 강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실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강화, 사이버폭력범죄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싶다.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한번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표현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이 이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상황 하에서 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이른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입법을 시도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I. 문제의 제기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현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큰 위협자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상에서의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증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의 형태로 확산되던 이러한 사이버폭력 현상은 한 인터넷매체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저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사건¹⁾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근년에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버공간에서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헤어진 여자 친구 이름으로 음란한 글을 올린 속칭 사이버스토커가 검찰에 적발되거나,²⁾ 또는 펜팔사이트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인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해 스톱킹 전화에 시달리게 하거나,³⁾ 또는 특정 여성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이나 난처한 글을 보내어 괴롭히는 등⁴⁾ 이른바 사이버성폭력이 또한 극심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1) 대통령 저격 패러디 만평은 2005년 4월 16일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에 네티즌이 독자 투고하는 형식으로 올려졌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노 대통령의 미간(眉間)을 저격수가 정조준하고 있는 내용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인터넷에서 이 패러디는 삭제됐다. 조선닷컴, 2005.4.19자 "대통령 저격 패러디 수사 파문" 참조.

2) 『중앙일보』, 2001년 10월 18일, 관련기사 참조.

3) "사이버 스톱킹 회사원 첫 영장," 『조선일보』, 사회면, 2001년 7월 5일.

4) "여성법조인 노린 간 큰 스톱커," 『조선일보』, 사회면, 1999년 2월 17일, 또한 사이버성폭력의 수단으로서의 사용 등 E-mail의 부정사용에 대한 각종 사례와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는 정 완, "이메일의 부정사용과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2001년 11/12월호).

또한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댓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한 무분별한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폭력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⁶⁾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5) 범죄와 처벌 등 형사사법체계 일반에 대하여는 Joshua Dressler, *Encyclopedia of Crime & Justice* 1 - 4, 2nd Edition (Gale Group, 2002) 및 David Levinson, *Encyclopedia of Crime and Punishment* 1 - 4 (Sage Publications, 2002) 등 참조.

6)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71%가 “사이버 성폭력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안산YWCA가 2003년 10월 한 달간 안산지역 20대 이상 여성 345명의 성폭행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3%(246명)가 원하지 않는 음란 메일이나 메시지를 받는 등 사이버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2003.12.13자 관련 기사 참조.

II.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이란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⁷⁾ 대체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 표현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몇몇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보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개념의 예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나,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⁸⁾ 또 다른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보면, “정크메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및 “스토킹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행할 수 없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7) 용어상 인터넷상의 폭력, 사이버폭력, 온라인폭력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 바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8)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이용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및 제14조(게시물의 관리) 참조.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있으나 형법학상 반드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옷깃을 잡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사이버공간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폭언, 사진합성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폭력’이라는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폭력행위를 감안할 때,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정의해 본다면,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형태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댓글, 게시물, 사진합성물,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행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일응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개념 정의이므로, 이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간결하게 정의한다면,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이버폭력의 유형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

9)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이용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및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등 참조.

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E-mail로 특정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음란스팸메일’, 인터넷 또는 PC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한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사이버성매매’,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등 현실세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을 들 수 있다.

III. 사이버폭력의 현황 : 사례와 실태

1. 사이버폭력의 사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 등 유통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어 인터넷의 발달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각종 뉴스에 등장하는 개별 사건마다에 인터넷이 용자들의 활발한 개인적 의견이 댓글 등의 형태로 제시됨에 따라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각종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 전파성 등 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⁰⁾

10) 사이버공간의 출현 및 사이버범죄의 특수성 등에 대하여는 Marcus Franda,

야당 당수나 대통령 등 유명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합성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연예인 X파일 공개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간호사들의 신생아 학대사진 유통 사건, 개똥녀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이버폭력 사례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게시물 및 댓글 등에 의한 피해사례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표 1〉 최근의 게시물 및 댓글 등에 의한 피해사례

사건명	일 시	내 용
MBC 음악캠프 나체시위 장면	2005.8	MBC 음악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가수 일부가 나체로 시위를 한 내용의 비디오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개똥녀 사건	2005.6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 사진 및 동영상 유포
서모씨 자살 사건	2005.5	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자살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이 해당 남성을 추적하여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한 사건

Launching into Cyberspace – Internet Development and Politics in Five World Region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John Seely Brown & Paul Duguid, *The Social Life of Inform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2); Cees J. Hamelink, *The Ethics of Cyberspace* (SAGE Publications, 2000); Steven Furnell, *Cybercrime – Vandalizing the Information Society* (Addison-Wesley, 2002); Jan Samoriski, *Issues in Cyberspace –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and Society on the Internet Frontier* (Allyn and Bacon, 2002); David Bell, *An Introduction to Cybercultures* (Routledge, 2001) 등 참조.

11) 박중현, “사이버폭력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표자료 (2005.7.21)에 일부 참조함.

체벌여교사 자살 사건	2005.4	체벌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자살하자 체벌 사실을 알렸던 학생들이 가출한 사건
신생아 확대 사건	2005.4	간호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신생아 확대사진이 유포되어 문제됨
트위스트킴 사건	2005.4	연예인 트위스트킴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로 몰려 피해
연예인 X파일 사건	2005.1	유명연예인 99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미확인 사실이 유포됨
왕따 동영상 사건	2004.2	왕따동영상이 촬영된 중학교의 교장이 자살
변정수 사망설 사건	2003.7	여대생이 연예인 변정수의 교통사고사망 허위기사 작성
H양 비디오 사건	2003.3	H양 비디오 사건 기사에 연예인 함소원의 사진이 게재되어 피해를 줌
수의사진 사건	2002.3	황수정, 성현아의 수의 차림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

최근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일명, 포피모)은 포털사이트들이 사이버폭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바 있다.

2. 사이버폭력의 실태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등 각종 기관의 활동에 나타난 피해신청 및 구제 건수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피

해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태자료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바, 심의대상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이며, 불법정보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언어폭력, 스토킹 등 각종 법률상 금지행위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5년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건수는 총 17,247건이나 되는데, 명예훼손이 1,372건, 모욕 404건, 음란 11,316건, 폭력/혐오 189건, 사행심 54건, 질서위반 3,809건, 수사의뢰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¹²⁾

〈표 2〉 2005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건수

구분	명예훼손	모욕	음란	폭력/혐오	사행심	질서위반	수사의뢰	계
시정요구	1,372	404	11,316	189	54	3,809	103	17,247

둘째로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의 활동에 나타난 실태자료를 보면, 동 센터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나 신고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때에는 피해구제 관련 법규와 민·형사 및 행정절차 등

12) 주요대응사례는 VIP 패러디, 신생아 학대 커뮤니티, 내신반대사이트 등이다. 박종현, 앞의 글 (2005) 참조.

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는바, 상담 후 피해자가 해당정보의 삭제, 가해자의 처벌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 심의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시정조치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 이첩한다.

동 센터의 최근 4년 5개월간 상담건수 15,027건 중 모욕을 포함한 명예훼손건수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195건이다.¹³⁾

〈표 3〉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분석

구분	계	피해내용					접수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성폭력	스토킹	기타	상담	신고
2001	1,054	278(33)	204	204	22	550	-	1,054
2002	3,616	1,248(115)	224	224	53	2,091	442	3,174
2003	4,217	1,916(894)	557	557	95	1,649	3,216	1,001
2004	3,913	2,285(979)	322	322	81	1,225	3,913	0
2005.5	2,227	1,468(521)	180	180	93	486	2,227	0
합계	15,027	7,195(2,542)	1,487	1,487	344	6,001	9,798	5,229

2) 수사기관 통계자료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사이버폭력 사범은 2002년도에는 3,546명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3,783명으로 늘어났고, 뒤이어 2004년도에는 4,214명으로 늘어나, 매년 연평균 8.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13) 도표내용은 박종현, 앞의 글 (2005) 참조.

14) “갈 데까지 간 사이버폭력,” 『인터넷한겨레』, 2005년 4월 24일.

〈그림 1〉 사이버폭력사범 적발추이



또한 급증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은 2005년 4월 - 6월에 걸쳐 사이버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명예훼손 등 1,293건에 대하여 3,221명을 검거하였는 바, 이는 전년 동 기간의 1,949명보다 63.3% 증가한 수치이다.¹⁵⁾

〈표 4〉 사이버폭력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건)¹⁶⁾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성폭력	공갈·협박	스토킹
712(516)	557(391)	568(260)	329(269)	73(69)

한편 최근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적 기관이나 사회 유명인사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

15) 연합뉴스 2005.7.11자 관련기사 참조.

16) 박종현, 앞의 글 (2005) 참조.

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명예훼손사범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상향조정 하는 등 ‘사이버명예훼손 사범 단호 대처 지시’를 일선청에 시달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¹⁷⁾

검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첫째,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행위, 둘째,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셋째, 대학, 기업, 공공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비방행위, 넷째,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후보자나 기타 선거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등이다.

3) 법원 판례

최근 사이버폭력 관련사건에 대해 판례¹⁸⁾ 입장을 살펴보면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 관계없는 대학생 B(19)씨를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B씨가 관련자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올린 이모(2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¹⁹⁾

17) 대검찰청 보도자료, “검찰,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호대처 지시” (2002.8.6) 참조.

18)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국제적 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하여는 사이버-0研究會 編, 사이버스페이스法 (日本評論社, 2000); 木村順吾, 情報政策法 (東洋經濟新報社, 1999); 銀座第一法律事務所 譯, 사이버-0 (中央經濟社, 1999); 內田晴康·橫山經通, 인터넷法 (商事法務研究會, 1999); 平野 晉·牧野和夫, 判例 國際인터넷法 (프로스퍼-企劃, 1998) 등 참조.

19) 2005.3.23 선고 2005고단572판결 참조.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사귀던 애인 A씨(20. 여)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지난 2005년 3월 이 남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깊은 관계였다” 라는 등의 글을 남기고 또 A씨에게는 휴대전화로 “청부살인을 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한 달 동안 100여 차례나 보낸 공익근무요원 윤모(23)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²⁰⁾

IV. 사이버폭력규제에 관한 국제동향

1. 주요국가의 동향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욕설에 의한 모욕행위나 사인합성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외국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폭력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이버폭력범죄 중 특히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그에 관한 입법례도 존재한다.

사이버스토킹은 스토킹(stalking)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출하여 새로운 범죄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스토킹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1990년대 초반부터 스토킹에 의한 피해사례가 점차 증가하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에

20) 2005.5.12 선고 2005고단1048 판결 참조.

서는 스토킹을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범죄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 말부터 스토키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은 현실공간에서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자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사이버스토킹' 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미국 등 각국은 종래의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에 사이버스토킹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하거나, 스토킹처벌법 외에 별도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의 스토킹처벌법은 팩시밀리전송에 의한 스토킹은 처벌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사례의 현실스토킹 관련 범죄행위가 보도되고 있으나²¹⁾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²²⁾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

21) 지난 1998년 통계에 이미 일반여성의 30%, 연예인의 42%가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20~30대 여성 1천3백27명과 남녀 연예인 1백6명을 상대로 행한 스토킹 피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여성의 30%인 4백명과 연예인의 41.5%인 44명이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가 더 이상 인기 연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여성 중 80.5%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여성 30% -연예인 42% 스토킹 피해,” 『동아일보』, 1998년 7월 16일.

22)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키처벌 특별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회기종료로 폐지된 바 있다. <http://na6500.assembly.go.kr/cgi-bin/sublist?BILLNO=151966> 참조.

1)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49개주에서 차례로 반(反)스토킹법이 제정됐다. 1996년 제정된 ‘주간(州間) 스토킹 처벌 및 방지법’은 위험한 스토킹자가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여러 주가 관련된 스토킹 사건을 다루고 있다.

1998년 11월에는 연방 반스토킹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스토킹의 범위를 ‘인터넷 E메일’ 등으로 확대하고 재범은 보석을 어렵게 해 놓는 등 스토킹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경찰이 스토킹이 있었다고 정당하게 판단하면 영장 없이 스토킹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9개 주에서는 미성년자 스토킹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여성 12명 중 1명이, 남성 45명 중 1명이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에는 20만 명의 스토킹자가 있고 이들로 인해 매년 전국에서 170만 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²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998년 ‘사이버스토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스토킹을 호출기, 전자우편, 팩시밀리, 음성메일 기타 전자통신 매체를 사용한 협박에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리 델라펜타라는 남성이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최초로 기소되었다. 델라펜타는 교회에서 만난 한 여성이 간절한 구애(求愛)를 받아주지 않자 그녀가 강간당하고 싶어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재했다. 이 여성의 외모는 물론 주소와 전화번호, 자택의 경보장치 해제법까지 공개했다. 이로 인

23) “스토커 표적 국경 없다,” 『동아일보』, 2000년 1월 7일 기사 참조.

해 이 여성은 수시로 낯선 남성들의 음란전화에 시달렸고 6명의 남성이 그녀를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한다.²⁴⁾

연방차원에서는 1999년 9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Stalking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of 1999)가 상원을 통과하였고, 2000년 7월에는 제106회 국회에 사이버스토커처벌법(Just Punishment for Cyberstalkers Act of 2000)이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된바 있다.²⁵⁾

2) 영국

영국에서는 1988년 부당통신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과 1997년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의 두 법률에 의하여 스토킹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²⁶⁾

먼저 부당통신법에서는 타인에게 고통 또는 근심을 야기할 의도로 음란하거나 심히 모욕적인 메시지 또는 위협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편지 또는 글을 보낼 경우를 유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위협이 다른 근거있는 요청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무죄이다.

괴롭힘방지법은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유죄로 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

24) “사이버공간 스토킹, 범망 피해갈 수 없다.” 『동아일보』, 2000년 1월 7일 참조.

25) 동 법안의 상세한 내용과 미국 각주의 스토킹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는 정 완 외, 『정보통신망상 불법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pp. 254-262 및 정 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 가을호 (2000) 등 참조.

26) 양 법률의 상세한 규정내용은 정 완 외, 앞의 책 (2004), pp. 262-273쪽 참조.

고 있다. 다만 그러한 괴롭힘이 다른 범죄의 탐지 또는 방지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법령을 준수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는 타인을 놀라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련의 행위에는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

괴롭힘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괴롭힘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두 번 이상 폭력의 공포에 빠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한 자는 이를 유죄로 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가 다른 범죄의 탐색 또는 방지를 위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법령을 준수한 것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련의 행위에는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

3)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스토커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스토커행위 등을 처벌하는 등 필요한 규제를 행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원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⁷⁾

스토커규제법에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빠져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그 동안 주로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하여 해결하여 왔는데, 이러한 적용태도에 비추

27)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상세한 내용은 정 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 가을호 (2000) 참조.

어볼 때 동법에도 사이버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혹은 팩시밀리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무언전화를 거는 것이나,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여러 차례 전화나 팩스를 보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 명예를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또는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음란사진 등을 송부하거나 전화나 편지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이 규제대상이다.

2.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사이버범죄는 국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범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에 따라 국가를 넘나드는 사이버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간의 국제조약 또는 다국간 국제조약의 체결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각국의 규제현황 및 정도는 각국의 인터넷발달 수준과 사이버범죄 양상 및 형사법제도의 차이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체결된 사례는 그 동안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유럽 이사회에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발효됨으

로써 드디어 사이버범죄도 최초로 국제조약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2001년 6월 사이버범죄방지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이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되어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입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조약은 기존의 정보기술개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정보기술의 보편적 이용과 부정적 사용에 따른 피해 등을 경험한 일부 선진국 등에서 국내법으로만 입법하여 처벌하던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초국가적 범죄 또는 국제범죄로서 최초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이 조약은 당초 2002년 발효예정이었으나 조약당사국들의 비준이 늦어져 2004년 7월 1일이나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사이버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사이버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첫 결실로 볼 수 있으며,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조약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²⁸⁾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전문과 4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사이버범죄의 실제법상 유형으로서 첫째 컴퓨터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 손괴, 시스템손괴, 장치의 오용), 둘째 컴퓨터관련 범죄(컴퓨터관련 위조와 컴퓨터관련 사기), 셋째 콘텐츠관련 범죄(아동포르노 범죄), 넷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28)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대한 상세는 정 완 외,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및 정 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등 보고서 참조.

네 가지 범죄에 가담한 중범(방조 또는 교사)의 책임과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절차규정으로 그 적용범위, 조건과 보호,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및 일부공표, 제출명령,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압수수색, 전송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콘텐츠데이터의 감청, 관찰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규정하고, 컴퓨터데이터 및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공개, 컴퓨터데이터의 접속에 관한 공조, 24시간 네트워크 공조 등 국제공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욕설 등 사이버모욕이나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사이버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아동포르노를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조약 제정 당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한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의 사이버범죄규제에 관한 조정작업을 통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정리된 결과로 보인다.

V.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의 발생을 막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사후의 법적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할 것이며, 타율적 규제보다는 관련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의 대책으로서는 첫째, 사이버공간 이용

자 개인에 의한 대처능력강화, 둘째, 사이버공간을 관리하는 관련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 셋째, 사이버공간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의 홍보 및 계몽활동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사이버폭력은 주로 인터넷상의 대화방이나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하여 많이 발생하며 전자우편이나 쪽지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온라인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온라인 이용자들은 폭력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거나 그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이용자 스스로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 이메일이나 대화방 등에서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사이버폭력을 쉽게 당하는 빌미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각종 ID 등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ID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셋째, ISP가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사이버 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일 사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 이용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제공업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당하거나 명

예를 훼손당하는 등 사이버폭력에 의한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그 내용을 회사나 수사기관 등에게 알릴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

아울러 피해상황과 관련된 모든 통신내용을 시간과 날짜를 자세히 기록하여 증거로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모든 옥설 등 통신내용과 가해자에게 보낸 경고메일, 게시판에의 게시물 등 가해행위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둔다. 그리고 시스템관리자, 경찰 등과 통신한 내용도 저장해 두어야 한다. 또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하여는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관련기업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첫째,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이다. PC통신 및 인터넷 관련기업들은 사이버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홍보·계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업계 차원에서도 반드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사이버폭력의 피해예방 및 홍보를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온라인 이용약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하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이 제정되어 있어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본약관

은 개별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며 또한 사이버폭력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나아가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유발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C통신 및 인터넷 관련 기업(ISP)에서는 이용약관에 사이버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불만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심의기준을 마련해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약관에는 신고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해신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면 위에 해당 ISP 주소나 전화번호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객센터의 설치·운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PC통신이나 중요한 ISP에서는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 다수의 ISP에서는 불만을 신고하는 절차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절차를 가진 경우에도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은지 약관상 명백하지 않으며, 신고를 한 경우에도 ISP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해 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피해구제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피해구제장치가 미흡하다. 때문에 ISP는 온라인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불편·불만사항을 신고·접수받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ISP가 이용자들의 불만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I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것인 경우에

는 이용자들이 사이버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기술적 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다. 기업들은 온라인이용자 스스로가 폭력 발생 가능 지역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장치로서는 수신거부기능, 여과기능, 추적기능, 경고문 전달기능, 간이신고 기능, 화면 캡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기업과 수사기관은 인터넷상에서 범죄가 감소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시민과 소비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지는 경우 인터넷 기업들은 현저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과 수사기관 간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보보호와 보안, 그리고 온라인상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관해 교육시키거나, 기업과 정부가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법집행기관과 컴퓨터 기업간의 인력 교환프로그램을 확립한다거나, 컴퓨터분야의 전문가 목록을 만드는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접속기록(로그기록)의 보관의무이다. 사이버폭력 등 사이버상의 범죄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하여도 그 익명성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즉 사이버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자는 범행의 결과가 발생한 현장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범죄자의 추적을 사후에 추적하게 되지만, 사이버 범죄는 범죄가 발생한 곳에 범죄자가 있는 경우

는 드물고 단지 범인이 남긴 전자적 신호만이 포착될 뿐이므로 그 전자적 신호를 보내 컴퓨터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결국 이러한 접속기록이 남아 있는 IP 확인을 통해서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로그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 범인 추적을 위한 단서가 사실상 없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조차도 이들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이 반드시 검거·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로그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홍보·계몽활동 강화

정보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시민단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추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유해정보의 감시 및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자정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네티즌들은 모임을 결성하고 건전한 통신문화의 조성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정보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건전한 통신을 위한 모임’ 과 같은 자발적인 네티즌 단체들은 유해정보의 감시를 담당함으로써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율적인 네티즌의 모임들이 활성화됨으로서 사이버폭력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그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나 인터넷 관련 기업에 대한 홍보와 계몽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학교, 직장 등 인터넷 이용기관에서도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직원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토로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홈페이지 게시판이 교사나 동료 학생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곳으로 이용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직장 등에서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직장 내에서 사이버폭력, 음란물 전송 등과 같은 행위를 할 때 징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고 아울러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학교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안내서의 내용은 주로 인터넷 상에서 자기 표현하는 기술 가르치기, 불량행위에 대한 제재조항 설명, 경고성 메일을 받은 횟수에 따라 게시판의 이용금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해지는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다.

VI.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1. 사이버모욕죄 신설

최근 사이버공간에는 이른바 댓글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댓글이란 어떠한 기사거리나 게시물에 대하여 그 기사를 읽은 네티즌이 그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짧게 달아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슈가 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댓글이 붙지 않지만, 이슈가 되는 글에 대하여는 수많은 댓글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댓글의 내용 중에는 욕설로 일관된 댓글들이 많다는 데 있다. 얼마 전까지 크게 이슈화되었던 왕따 학생 사건, 개똥녀 사건 등의 경우에 잘 나타났던 바와 같이 그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욕설을 댓글로 달아 비난일변도로 사이버공간이 점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즐지에 욕설 등에 의하여 피해자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형법상 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실공간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을 해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본 네티즌들의 퍼나르기 등에 의하여 순식간에 전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한번 시작되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뿐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모욕의 특징을 고려함이 없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면 그 뿐이고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법상 문제로 할 수 있다고 말할 뿐이라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에 의한 피해는 확대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가하다고 말하는 입장도 유력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⁹⁾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댓글 등을 통한 욕설 등 사이버모욕행위는 도가 지나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는 적절히 규제가 필요하다.

29)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내용은 정 완, “사이버모욕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원 소식 (2005년 7/8호) 참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지만, 형법상 범죄로 되어 있는 욕설 등 모욕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될 수는 또한 결단코 없으므로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욕설 등 모욕행위를 범죄행위로서 입법하여 규제하되, 아울러 그 피해의 전파성, 확산방지불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고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식의 형법상의 소추요건을 또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사이버 폭력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³⁰⁾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최근 네티즌을 상대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이는 인터넷의 주요 이용자인 네티즌조차도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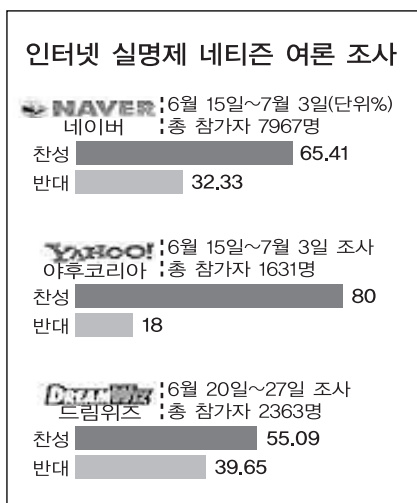
세계 제일의 초고속망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선진국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만개된 상태다. 그러나 양날의 칼과도 같이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해악을 주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욕설 과 같은 인신공격이 가장 문제다. 인터넷에 의한 개인

30) 『연합뉴스』, 2005년 7월 4일 기사 참조.

31) “인터넷 실명제,” 『중앙일보』, 2005년 7월 4일.

32) 그 배경에는 최근 도를 넘어선 인터넷의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연합뉴스』, 2005년 7월 4일 기사 참조.

〈그림 2〉 인터넷실명제 네티즌 여론조사



33)

33)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포털에 따르면 야후, 네이버 등 포털이 실시 중인 인터넷 실명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최대 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6대 4의 비율을 보인 지난달 말까지의 조사와 달리 최근 들어 찬성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후코리아가 지난달 15일부터 실시 중인 여론조사 결과 3일 현재 찬성 의견이 80%인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4%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반대입장을 보인 네티즌은 32.3%에 그쳤다. 드림위즈가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똑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5%, 반대가 39.6%로 나타났다. 야후코리아와 네이버 측은 “조사 초반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6대 4의 비율을 보였지만 이달 들어 찬성 의견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연예인 X파일’이나 ‘개똥녀’ 사건 등에서 피해자들이 형법상의 처벌보다 훨씬 가혹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터넷 실명제 찬성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 건수는 2002년에 11만8868건이었지만 2003년에는 16만 5119건에 달했다. 2004년에는 신고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실명제,” 『중앙일보』, 2005년 7월 4일.

의 인격권 침해는 본인에게는 회복불능의 치명적 타격이 된다. 네티즌과 메카시즘의 합성어인 '네카시즘' 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대판 마녀사냥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 X파일' 이나 '개똥녀' '트위스트김' 사건 등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 사례들이다.

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작년에는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더라도 당사자가 고발을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터넷 공간의 개인명예 훼손 사례는 비밀비재할 것으로 짐작된다.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은 작년에도 제기된바 있으나 찬성 못지않게 반대의견이 거세자 흐지부지됐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설사 실명제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일리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부작용 실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환경을 모종의 정화 조치 없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실명제는 범죄수사의 편의를 위한 편의적 발상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실명을 걸고 행하는 의사의 표현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표현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명예훼손행위는 이미 형법상 중요한 범죄행위의 일종이므로 그러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제한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명을 사용하게 하는 약간의 개인적 불편함에 비하여 그로부터 보호되는 타인의 명예권과 인격권이라는 공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고 판

단되는바 따라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실명제는 위험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을 건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인 것이다. 설사 인터넷실명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폭력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은 그 실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인터넷실명제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한 국어훼손은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이 었다. 욕설 등 무례한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표준어를 파괴하고 의사소 통에 있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 등은 문화국가 실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문화의 올바른 형성과 국어보호를 위해 인터넷실명제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³⁴⁾ 하물며 댓글욕설에 의한 인격침해나 사진합성물 등을 통한 타인의 명예훼손행위의 현격한 감소에도 매우 현저한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 우리는 새로이 등장한 효율적 매체인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헌법 제21조 제4항이 요구하는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함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어느 쪽의 의견을 택하건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에 의한 제도

34)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실시에 관한 소고,” 정보통신부 자료실 토론회자료.

의 실천이 요구되는 바이다.

3. ISP의 책임 강화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즉, ISP들의 무책임성과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자사통신망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ISP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할만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ISP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나 대부분의 ISP들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대형 ISP 게시판, 각종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사이버폭력 사범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여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를 들면 각종 음란물 판매광고나 원조교체를 부추기는 내용). 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폭력적 게시물에 대해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도덕적 불감증과 상업적 이기주의에 의해 이러한 성폭력 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

의 책임을 저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컨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음란물 판매를 한 경우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적 글을 실은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형법상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이버폭력정보를 비롯한 사이버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법령의 직접위반자와 함께 게시판관리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최소한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그 자율규제를 초래하여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직접 위반의 고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ISP의 형사책임은 불법정보에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 형사책임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ISP에게 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보증인의 의무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의무라는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다른 서버에 저장된 불법정보를 매개해 주는 ISP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보증인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ISP의 보증인의 의무는 ISP가 자신의 서버에 불법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불법정보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ISP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포결과와 관련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

다. 즉, ISP가 최종적으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ISP가 불법정보에 대한 기술적 차단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법공동체로부터 그러한 정보차단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때뿐인데, 대부분의 ISP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최근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³⁶⁾ 이 판결에 대하여 학자들은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라면 몰라도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³⁷⁾ 입법을 통하지 않은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고 무리한 해석이므로 반드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등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음란범죄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특히 전시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음란물이나 음란정보를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풍속과 청소년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경우 일반 사이트에서 링크된 경우뿐 아니라 음란정보 사이트에서라도 음란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른 클릭을 해야 하고 그것도 대부분 여러

35) O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호중, “위험정보의 유통과 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비교형사법학회 2003년도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03.8.21) 참조.

36) 대법원 2003.7.8 선고2001도1335 판결 참조.

37) 예컨대 서보학, “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해 놓은 경우의 형사책임,” 『법률신문』, 제 3205호 판례평석 참조.

번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정보에 노출되는 경우’란 그리 많지 않고, 특히 다른 사이트의 초기 화면을 링크시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초기화면에 링크시킨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인가는 법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를 통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전시행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해 법률에 ‘전시’ 이외에 ‘링크’라는 행위유형을 추가하여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따라서 음란정보에 관한 한 ‘음란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음란정보의 연못’ 정도에서 사용하던 방법은 ‘음란정보의 바다’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³⁸⁾

이와 같이 ISP의 형사책임인정에 비판적인 견해도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주로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뉴스댓글 등을 통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ISP의 법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술을 하였지

38) 오영근,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의 개념,” 『법률신문』, 제3213호 (2003.10.23) 판례평석, p. 13.

만, 다수의 네티즌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관리자가 불법게시물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포털사업자에게 사이버윤리 척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의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업평가기준이나 사이버윤리척도를 충분히 활용한 사업자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사이버공간의 정화 및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VIII. 결 어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만일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성 표현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고 하겠다. 혹자는 “현실공간에서의 폭력도 아닌데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이 심각하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고 보장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사이버폭력을 대한다면 그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이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위협자일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

저오는 이른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규제를 시도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 남경국,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연세대 석사논문 (2004).
-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 박원경,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논문 (2002).
-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_____,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2).
- 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2001년 가을호).
- 정보통신부, 『국가정보보호백서』 (2005).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년 정보통신윤리통계』 (2004.3).
- _____, 『인터넷 정보이용 실태조사』 (2005.6).
- _____, 『정보통신윤리백서』 (2002).
- 정 원 외,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____ 외,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____,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3/4).
- ____, “사이버모욕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2005.7/8).
- ____, “인터넷 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4).
- ____,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____ 외, 『정보통신망상 불법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인터넷모니터 종합보고서』 (2005.1).
 _____,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2004.12).
 _____, 『청소년보호정책 방향』 (2004.12).
-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백서』 (20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2005).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5/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홍순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
 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4).
- Angelis, Gina De, *Cyber Crimes*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Bell, David, *An Introduction to Cybercultures* (ROUTLEDGE, 2001).
 Boni, William C., *Crime on the Internet* (BH, 1999).
 Brown, John Seely & Duguid, Paul, *The Social Life of Inform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2).
 Dressler, Joshua, *Encyclopedia of Crime & Justice 1 - 4*, 2nd Edition
 (Gale Group, 2002).
 Ferrera etc, *Cyber Law* (West, 2001).
 Franda, Marcus, *Launching into Cyberspace - Internet Development and
 Politics in Five World Region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Furnell, Steven, *Cybercrime - Vandalizing the Information Society*
 (Addison-Wesley, 2002).
 Grabosky, PN, Smith, Russell G, *Crime in the Digital Age* (Transaction
 Publishers · The Federation Press, 1998).
 Hamelink, Cees J., *The Ethics of Cyberspace* (SAGE Publications, 2000).
 Levinson, David, *Encyclopedia of Crime and Punishment 1 - 4* (Sage
 Publications, 2002).

Samoriski, Jan, *Issues in Cyberspace –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and Society on the Internet Frontier* (Allyn and Bacon, 2002).

Samoriski, Jan, *Issues in Cyberspace –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and Society on the Internet Frontier* (Allyn and Bacon, 2002).

Smith, Graham J H, *Internet Law and Regulation* (3rd Ed.) (London : Sweet & Maxwell, 2002).

Rustad, Michael L., Daftary Cyrus, *E-Business Legal Handbook*, 2002 Edition, (New York Gaithersburg, 2002).

名和小太郎, 『変わりゆく情報基盤 – 走る技術・追う制度』(關西大學出版部, 2000).

岡村久道・近藤剛史, 『インターネットの法律實務』(新日本法規, 1999).

鈴木秀美, “インタネットと表現の自由-ドイツ マルチメディア法制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1153 (1999.4.1).

田村善之, “デジタル時代の知的財産法制度” *現代の法* 10. 情報と法 (岩波書店, 1997).

西村總合法律事務所, 『IT法大全』(日經BP社, 2002).

岡村久道, 『新保史生, 電子ネットワークと個人情報保護』(經濟産業調査會, 2002).

サイバロ研究会 編, 『サイバースペース法』(日本評論社, 2000).

木村順吾, 『情報政策法』(東洋經濟新報社, 1999).

銀座第一法律事務所 譯, 『サイバロー』(中央經濟社, 1999).

内田晴康・横山經通, 『インターネット法』(商事法務研究會, 1999).

平野 晋・牧野和夫, 『判例 國際インターネット法』(プロスパー企劃, 1998).

| **Abstract** |

A Legal Study of Cyber Violence

Choung, Wan (Kyunghee University)

This article is about some legal countermeasures of cyber violence, for example slander, curse, libel etc. in cyberspace.

Internet is regarded as the 'most participatory marketplace' and 'speech-enhancing medium' in the 21th century. Some argue that Internet should be set free from legal regulations.

Can we then say that Internet is really a free space ? The answer would be no. Internet has already become a subject of legal regulation, although the degree of regulation differs according to each country.

Internet takes the form of a mixtur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s, and press.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evaluate Internet as just one of the above-mentioned media, thus mitigate or aggravate the responsibilities in it. Rather, Internet should be recognized separately.

An e-mail could be regarded as a form of private communication, but an open bulletin board cannot be regarded as a form of private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gulate defamation an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This article is composed of some chapters as follows ;

Chap.1 Introduction

Chap.2 Concept and Patterns of Cyber Violence

Chap.3 Current Situation of Cyber Violence

Chap.4 Prevention against Cyber Violence

Chap.5 Some Legal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Violence

Chap.6 Conclusion

I suggest some legal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violence, for example,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help victims, legislation of cyber curse crime, introduction of internet real name system, strengthening of ISP liability etc. in this article.